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거창군민상의 수상자 자격, 후보자의 추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상 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수상자를 전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영예를 드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민상 시상시기는 매년 9월 25일 군민의 날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신설).

나. 시상방법으로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하고, 공직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8조 삭제).

다.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민상을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자격요건

- 현행 :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
- 변경 :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용어변경

- 본적지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마. 군민상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재 추천에 관한 제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삭제).

○ 관할 읍·면장 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 ⇒ 관할 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3년 이내 재 추천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바. 후보자 추천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사.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아.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9조제1항).

○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기능에 군민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함

자. 위원회의 소속 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차. 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공직선거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4. 7. ~ 2009. 4.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로, “수여하는 것”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상 및 시기”를 “시상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효행”을 “군민상은 효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요건에”를 “자격 요건에도”로 한다.

①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 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군민 20인이상”을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하고자 할때”를 “추천할 때”로, “사항을”을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접수하였을 때에는”을 “접수한 경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리 수상)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심사선정을”을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군민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행정담당주사”를 “군민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군민 화합과 <u>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u> 거창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u> ----- <u>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p>
<p>제2조(시상 및 시기)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u>연1회</u>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 (매년 9월 25일)로 한다. <단서 신설></p> <p><신 설></p>	<p>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 ----- <u>연 1회</u> ----- ----- ----- . <u>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u> ② <u>시상은 표창패로 한다.</u></p>
<p>제3조(시상대상) ① <u>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u> 시상한다.</p> <p>② <u>군민상은 대상 1인</u>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3조(시상대상) ① <u>군민상은 효행</u>----- ----- ----- ----- ----- . ② ----- <u>1명</u>----- ----- ----- . <u>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u>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예정일 현재 10년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u></p> <p>② <u>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u></p>	<p>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u>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u></p> <p>② ----- 자격요건에도 ----- -----.</p>
<p>제5조(공적기간) <u>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u></p>	<p>제5조(공적기간) ----- <u>해당연도 -----.</u></p>
<p>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u>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는 관할 읍·면장 또는 <u>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u></u></p> <p>② <u>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③ <u>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3년 이내 재 추천될 수 없다.</u></p>	<p>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 ----- ----- ----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u>군민 20명 이상</u>----- -----.</p> <p>② ----- 추천할 때----- ----- 각 호의 서류를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전까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p>	<p>제6조의2(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수상자 결정) ----- 제6조에 따라 ----- 접수한 경우 ----- ----- ----- -----.</p>
<p>제8조(부상)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u><삭 제></u></p>
<p><u><신 설></u></p> <p>제9조(군민상 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⑤ (생략)</p>	<p>제8조의2(대리 수상)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p> <p>제9조(군민상 심사위원회) ① ----- -----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 중-----. ④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 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p> <p>② 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p> <p>③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u>행정과장이</u> 되고 서기는 <u>행정담당주사가</u> 된다.</p> <p><신 설></p>	<p>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군민상업무 담당과장</u>----- <u>군민상업무 담당주사</u>-----.</p> <p>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23] [법률 제8541호, 2007. 7.23, 타법개정]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 11. 삭제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크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④ 삭제 <2004.3.12>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